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6. 3.
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‘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’로 규정하는 내용의 ‘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’이 2026. 2. 3. 공포되어 같은 해 8. 4. 시행을 앞두고 있음.

개정안은 친권자등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, 그 외에 친권자등이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.

이에 친권자등이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도 본 개정안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9조제7항 중 “아동학대행위자”를 “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”로 한다.

안 부칙 중 “공포한 날”을 “2026년 8월 4일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9조(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) ① ~ ⑥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9조(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제6항에 따라 <u>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친권자,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친권자등”이라 한다)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로서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</u>	제29조(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제6항에 따라 <u>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친권자,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친권자등”이라 한다)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로서 친권자등의 동의를</u>

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취학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언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취학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⑦ (생략)	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 부 칙 이 법은 <u>공포한 날</u>부 터 시행한다.	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 부 칙 이 법은 <u>2026년 8월 4일</u>부터 시행한다.
---------------	--	---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4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김형동 · 조정훈
조배숙 · 김성원 · 유상범
박상웅 · 최보운 · 안철수
윤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,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.

이는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,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.

그런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전학절차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전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. 특히, 아동학대 행위자

가 보호자 모두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 이 같은 전학이 사실상 불가함.

이에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이거나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학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고, 해당 교육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29조제7항 신설).

※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

친권자등이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시행일을 2026년 8월 4일로 수정함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친권자,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친권자등”이라 한다)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인 경우로서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이 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 에 대한 지원) ①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9조(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 에 대한 지원) ① ~ ⑥ (현행 과 같음) <u>⑦ 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 원하려는 시·도지사 또는 시 장·군수·구청장은 친권자, 후 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 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 (이하 이 조에서 “친권자등”이 라 한다)이 모두 아동학대행위 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 자인 경우로서 친권자등의 동 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 하거나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 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 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 거나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 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</u>

⑦ (생 략)	<u>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 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취학 요청을 받은 교 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----------------	---